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동향 및 한국에의 시사점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Trends and Implications

김연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1. 서론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2010년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192개국에 비준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지지하는 국제인권조약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히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본 협약에 비준하여 1996년 1차 국가보고서, 2003년 2차 국가보고서, 2008년 3·4차 통합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내년 9월에 있을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심의는 유엔 아동권리위원들이 한국 대표단에게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와 추가보고서의 내용에 관해 질의하고 한국 대표단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일방향적인 보고가 아닌 만큼 한국 대표단은 심의를 철저히 준비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의 질문에 대해 원활히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10년에 심의한 15개국¹⁾ 중 경제적 수준이 높은 노르웨이, 벨기에, 일본²⁾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물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룬 주요 이슈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국외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동향과 최근 국제사회의 관심이슈를 살펴봄으로써, 한국대표단의 심의준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가 아동권리영역 중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하는지 판단하는데 주요한 자료로 삼고자 한다.

1) 아르헨티나, 벨기에, 마케도니아, 그레나다, 일본, 나이지리아, 튀니지, 앙골라, 부룬디, 과테말라, 몬테네그로, 니카라과,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2) IMF의 GDP순위에 따르면, 한국 15위, 노르웨이 24위, 벨기에 20위, 일본 2위로 나타남.

2. 주요 국가의 영역별 권고사항과 시사점

유엔아동권리협약은 8개 영역(cluster)으로 나누어 구성된다. 8개 영역은 일반이행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부여,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특별보호조치이다.

여기서는 아동권리위원회가 노르웨이, 벨기에, 일본에 공통적으로 권고한 사항이 무엇인지 영역별로 분석하고, 3개국에 대한 권고사항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아동권리위원회가 여러 나라에 유사한 권고를 한 것은 이것이 아동권리보장에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므로, 한국정부는 반복된 권고사항에 관심을 갖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한국 대표단은 국가 심의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다.

1) 일반이행조치(제4조, 제42조, 제44조 6항)

일반이행조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4조, 제42조, 제44조 6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제4조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해당국의 전반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2조와 제44조 6항은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홍보 및 국가보고서 홍보, 권리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4조는 유보조항 철회, 기타 국제협약의 비준, 국내법과 협약의 일치,

국가행동전략, 아동영향평가, 아동예산편성 및 예산분석,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모니터링기관, 시민사회의 참여, 국제적 협력 및 원조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³⁾, 제4조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먼저, 아동권리위원회가 3개국에 공통적으로 권고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권고사항 중 이행이 되지 않았거나 이행상황을 보고서에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국가에게 각 국의 유보조항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다. 셋째, 국내법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일치하도록 법을 제·개정하도록 하였다. 넷째, 아동권리 옵스브즈퍼슨이 아동의 청원을 조사하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청원제도 운영을 위한 자원을 제공받도록 권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보건영역 종사자, 사회복지사, 법조인, 정책결정자, 공무원 등에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아동권리위원회가 3개국 중 2개국에게 권고한 사항을 정리한 결과, 약 7가지 권고사항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아동권리위원회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간 아동정책 협력 및 조정을 위해, 모든 지역의 아동권리정책을 모니터링 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는 지방자치제로 지역 간 아동권리정책 및 서비스 조정이 어렵고 거주 지역에 따라 아동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양과 질이 상이하야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3)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09). 아동권리협약 이행 핸드북(번역서).

둘째, 아동관련 국가행동계획의 목표, 실행과정, 모니터링체계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World Fit for Children'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정부는 계획의 실행을 위해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셋째, 아동권리보장을 기본 가치로 예산을 검토하고, 예산편성 시 아동 및 국민이 참여가능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하며, 아동영향평가 등 아동예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유엔아동권리협약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아동권리위원회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여섯째, 아동권리정책 계획, 이행, 평가, 국가보고서 작성 시, 시민사회와 협력해야 한다. 일곱 번째, 국외원조 비율을 GDP의 0.7%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가 3개국에 권고한 사항을 근거로,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일반이행조치'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보조항인 '아동의 상소권'과 '입양허가제 도입'의 철회를 검토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는 분단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의 상소권'을 제한하는 현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아동입양허가제' 도입은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⁴⁾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사업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면서도 평등하고 중앙·타 지방정부와 연계되어야 한다. 지난 2005년 아동복지사업이 지방 이양되면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정부-지방정부간 서비스 조정이

어려워지고, 자치단체장의 의지, 지역의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상이한 서비스의 양과 질로 인해 지역 간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복지계획 수립 시 중앙정부 계획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분권교부세 확대, 아동복지사업의 중앙정부로의 재이양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함으로써 지역 불평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난 2003년 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제2차 권고사항으로 언급했듯이, 아동예산을 확대하고 아동권리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예산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아동에 투입하는 예산은 우리와 비슷한 경제수준의 국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는 국외원조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국외원조비율은 약 0.1%로 국외원조비율의 상향조정도 주요한 과제이다.

2) 아동의 정의(제1조)

아동의 정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임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본에게 남아의 혼인가능연령이 18세인 것에 비해 여아의 결혼가능연령은 16세인 것은 비차별원칙(제2조)에 어긋나, 여아의 혼인가능연령도 18세로 상향조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3년 제2차

4) 대한민국 정부(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

표 1. 노르웨이, 벨기에, 일본의 ‘일반이행조치’ 권고사항

권고사항		노르웨이	벨기에	일본
권고	이전 권고사항의 이행 촉구	○	○	○
유보	유보조항 철회	○	○	○
입법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국내법의 조화	○	○	○
조정	통일성 있는 아동권리 정책 실시를 위한 중앙정부-지자체간 또는 지자체-지자체간의 아동권리정책 조정 및 모든 지역의 아동권리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	○	
	각 지역 내 아동권리 모니터링체계간의 조정 및 시민단체와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협력을 위한 국가적 방안 마련		○	
아동에 대한 국가행동계획	국가행동계획의 목표, 실행과정, 모니터링체계 구체화		○	○
	국가행동계획 수립 시, 기본 가치로 아동권리 설정		○	
	국가행동계획의 실행을 위한 충분한 경제적 지원		○	○
	국가행동계획에 유엔의 ‘World Fit for Children’ 반영		○	○
독립적인 모니터링	아동권리옴부즈퍼슨에 개인청원제도 운영자격 및 자원 제공	○	○	○
	해당 지역의 옴부즈퍼슨제도와 타 지역 및 중앙정부 정책과의 조화		○	
	국가인권위원회 및 옴부즈퍼슨에 할당된 자원 및 기능, 권리 등을 다음 국가보고서에 서술			○
자원 할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여건 차이와 관계없이 아동의 서비스 이용권리 보장	○		
	아동권리보장을 기본 가치로 하여 아동예산 검토	○		○
	아동예산 모니터링 실시(예산 투입이 아동에 미친 영향도 포함하여 모니터링)		○	○
	경제위기 등 환경적 변화로부터 아동 예산의 변동방지		○	○
	아동예산 편성 시, 아동 및 국민의 참여 및 의견 청취		○	○
자료 수집	아동관련 자료수집 시스템 설치		○	
	아동관련 자료수집을 조정하기 위한 충분한 인적·경제적 자원 제공		○	
	권리가 저해될 위험이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			○
	협약이행 점검을 위한 지표개발 및 평가 실시			○
교육 및 인식고양	아동, 성인을 대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홍보		○	○
	아동관련 종사자 대상 권리교육 강화	○	○	○
	대학교 아동·가족 전공학생에 아동권리교육 실시	○		
	초·중·고등학교에서 아동권리교육 실시	○	○	
시민사회와의 협력	아동권리정책 계획, 이행 및 평가, 국가보고서 작성 시, 시민사회와 협력		○	○
국제적 조정	국외원조 비율을 GDP의 0.7%이상으로 확대		○	○
아동권리와 기업	기업의 아동권리저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의 규제강화			○

자료: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노르웨이(CRC/C/NOR/CO/4), 45세션 벨기에(CRC/C/BEL/CO/3-4), 일본(CRC/C/JPN/CO/3)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oncluding observations를 바탕으로 재구성.

권고사항에서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권고조치 받았으며, 지난 2007년 민법을 개정하여 여아의 혼인가능연령을 남아(만18세)와 동일하게 조정하였다⁵⁾.

3) 일반원칙(제2조, 제3조, 제6조, 제12조)

일반원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4가지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제2조), 최선의 아동이익(제3조), 아동의 생존·발달권(제6조),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견해가 존중받을 권리(제12조)를 가리킨다. 특히, 제2조에서 말하는 ‘차별’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 민족, 사회계층, 빈부, 출생 등을 근거로 하는 모든 배척, 제한 또는 우대를 말한다.⁶⁾

아동권리위원회가 3개국에게 공통적으로 권고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국은 빈곤, 다문화,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취해야 한다. 특히, 노르웨이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어도 인종,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여,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뿐 아니라 행정적·정책적 조치도 함께 취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둘째, ‘최선의 아동이익’은 모든 법률과 사법·행정적 결정 절차에 반영되도록 한다. 특히, 가족, 대안양육, 이주에 관한 이슈와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최선의 아동이익’ 원칙이 반영되어야 해야 한다. 또한 ‘최선의 아동이익’ 원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이들이 이를 준수하게 한다. 셋째, 가족, 학교, 아동기관, 지역사회 및 행정적·사법적 절차에서 모든 아동의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

위의 세 가지 권고사항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특히, 비차별원칙에 근거하여 빈곤, 다문화,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권고는 오랜 시간 단일민족이라고 말해오던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이다. 현재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또한 아동 견해에 대한 존중의 원칙과 관련하여

표 2. 노르웨이, 벨기에, 일본의 ‘아동의 정의’ 권고사항

권고사항		노르웨이	벨기에	일본
아동의 정의	남아와 동일하게 여아의 혼인가능연령을 18세로 조정			○

자료: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노르웨이(CRC/C/NOR/CO/4), 45세션 벨기에(CRC/C/BEL/CO/3-4), 일본(CRC/C/JPN/CO/3)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oncluding observations를 바탕으로 재구성.

5) 대한민국 정부(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

6)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09). 아동권리협약 이행 핸드북(번역서).

여, 지난 2003년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 게 아동에 대한 전통적 태도로 인해 가정, 학교, 기타 기관과 전체 사회 속에서 아동의 견해를 존중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권고하였다.⁷⁾ 하지만 아동의 표현의 자유와 견해에 대한 존중은 현재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아동총회, 청소년특별회의, 움부즈키즈 등을 통해 일부 아동·청소년이 정책 참여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나, 모든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존중받도록 하는 제도적 방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4) 시민적 권리와 자유부여(제7조, 제8조, 제13조~제17조, 제37조 1항)

시민적 권리와 자유부여는 제7조, 제8조, 제13~17조, 제37조 1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제7조는 아동의 출생신고와 성명권, 국적 취득권 및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를, 제8조는 아동의 신분을 가질 권리 그리고 그 신분을 유지하고 필요시에는 국가에 의해 신분회복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13조는 모든 아동이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제14조는 아동에게도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관한 기본적 시민권을 명시한다. 제15조는

표 3. 노르웨이, 벨기에, 일본의 '일반원칙' 권고사항

권고사항		노르웨이	벨기에	일본
비차별	빈곤, 다문화,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	○	○	○
	연령으로 인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법적 조치	○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를 보호대상자로 규정하도록 형법 개정			○
최선의 아동이익	'최선의 아동이익' 원칙에 대한 교육실시, 원칙을 모든 법률 및 사법·행정적 절차에 반영	○	○	○
	아동시설 내 제도, 서비스에 대한 기준 마련			○
아동의 생존·발달권	아동자살의 위험요인 파악 및 예방책 마련			○
	학교 내 사회복지사 배치 및 심리상담 서비스 실시			○
	아동생활지도(child guidance)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방지			○
아동견해에 대한 존중	시설 내 아동에 대한 안전 보장			○
	가족, 학교, 아동기관, 지역사회 및 모든 행정·사법적 절차에서 모든 아동의 견해에 대해 존중	○	○	○

자료: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노르웨이(CRC/C/NOR/CO/4), 45세션 벨기에(CRC/C/BEL/CO/3-4), 일본(CRC/C/JPN/CO/3)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oncluding observations를 바탕으로 재구성.

7)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32세션 대한민국(CRC/C/15/Add.197)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oncluding observations. 2003.

아동의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제16조는 모든 아동이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상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다. 제17조는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대중매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원로부터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위한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다.

‘시민적 권리와 자유부여’ 영역에서 아동권리위원회가 3개국에 공통적으로 권고한 사항은 없었으며, 다만 차별에 대하여 2개국에 동일한 내용을 권고하였다. 첫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별은 금지되어야 한다. 둘째, 비폭력·비체벌에 대해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국민들의 인식고양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내체벌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감자다. 현재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는 체벌을 전면금지하고 대처지도방안을 매뉴얼로 만들어 배포하였지만, 아직도 차별전면금지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일부 교사 및 학부모는 차별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차별전면금지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아동권리위원회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별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권고사항은 우리나라가 비폭력·비체벌에 대한 부모교육 및 인식고양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차별전면금지를 해야 함을 시사한다.

5)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제5조, 제9~11조, 제18~21조, 제25조, 제27조 4항, 제39조)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영역은 제5조, 제18조 1~2항, 제9~11조, 제18~21조, 제25조, 제27조 4항, 제39조로, 부모의 지도 및 아동능력, 부모의 책임, 부모와의 분리, 가족 재결합을 위한 입국과 출국, 불법해외이송 및 미귀환,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 입양,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정기조사, 아동양육비의 회부, 피해아동의 회복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⁸⁾

표 4. 노르웨이, 벨기에, 일본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부여’ 권고사항

권고사항		노르웨이	벨기에	일본
사생활 보호	부모가 아동 신상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행위로 인한 아동의 사생활 침해 방지	○		
출생등록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
차별	모든 상황에서 차별 금지화		○	○
	비폭력·비체벌에 대한 부모교육 및 인식고양 캠페인		○	○

자료: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노르웨이(CRC/C/NOR/CO/4), 45세션 벨기에(CRC/C/BEL/CO/3-4), 일본(CRC/C/JPN/CO/3)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oncluding observations을 바탕으로 재구성.

우선, 아동권리위원회가 3개국에 공통적으로 권고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의 수를 감소하기 위해, 예방적 차원의 아동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위기가족이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모든 지역의 학대·방임아동에게 충분한 서비스·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다음으로 아동권리위원회가 2개국에 권고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가 원활한 아동양육을 행하기 위해, 해당국은 출산 휴가 확대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가정 외 보호방안을 다양화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아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대안 양육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학대·방임을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다. 다섯째, 모든 입양아동의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화한다.

아동권리위원회가 3개국에 권고한 사항을 근거로,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위기가정에 대한 경제적, 의료적, 교육적 지원을 확대하여 부모가 아동양육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드립스타트, 위스타트, 시소와 그네, 아이돌보미사업, 방과 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학대피

해아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매우 열악하다. 학대피해아동은 신체뿐 아니라 심리정서적인 충격으로 고통 받지만, 이를 치료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 또한 보호기관의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동을 다시 집으로 되돌려 보내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우리나라는 학대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막고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최우선의 이행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6) 기초보건 및 복지(제6조, 제18조 3항, 제23~24조, 제26조, 제27조 1~3항)

‘기초보건 및 복지’는 제6조, 제18조 3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1~3항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아동의 생명·생존 및 발달, 맞벌이 가정의 아동양육시설, 장애아동의 권리, 보건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이용권리,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등에 대한 내용이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정신질환 예방, 경증·중증 정신질환 치료 등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보건시스템을 강화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ADHD아동에 대해 조사하며, ADHD아동, 부모, 교사에 심리적·교육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3개국에 공통적으로 권고하였다.

아동권리위원회가 2개국에 공통적으로 권고한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의 약물남용 및 비만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모든 지역의 아동이 보건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8)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09). 아동권리협약 이행 핸드북(번역서).

표 5. 노르웨이, 벨기에, 일본의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권고사항

권고사항		노르웨이	벨기에	일본
가정환경	부모의 원활한 아동양육을 위한 출산휴가 확대 등 제도적 방안 마련	○		○
	아동분야 사회서비스 이용을 위한 긴 대기기간의 원인 조사		○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서비스 접근성 고양		○	
	전문인력에 의한 아동분야 서비스 제공		○	
	이혼, 가족 내 갈등 관련 전문가에게 아동권리교육	○		
	부모가 국외로 추방되는 경우, 아동이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권리 보장	○		
	부모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교도소 직원은 아동의 부모 면회를 원활히 함	○		
	부모의 동의와 관계없이 아동의 서비스 이용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 보장	○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가정 외 보호 아동의 감소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아동복지서비스 강화	○	○	○
	가정 외 보호방안을 다양화하여, 최선의 아동이익에 부합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의 장소에서 아동을 생활하도록 함	○		○
	대안양육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
	대안양육시설 내 아동의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을 위한 방안 마련	○		
	대안양육시설 지침서 마련	○		
	대안양육시설 등의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 및 처벌, 피해아동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 제공			○
아동학대와 방임	학대·방임아동에 충분한 서비스 제공	○	○	○
	학대·방임의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	○
	학대·방임 신고방법 및 피해아동의 서비스신청방법에 대한 홍보	○		
입양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	
	모든 입양아동 정보의 수집 및 체계화		○	○
	사법기관에 의한 입양허가			○
	최선의 아동이익에 부합하는 입양가정 선택			○

자료: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f 노르웨이(CRC/C/NOR/CO/4), 45세션 벨기에(CRC/C/BEL/CO/3-4), 일본(CRC/C/JPN/CO/3)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oncluding observations을 바탕으로 재구성.

한다. 셋째, 장애아동의 위한 통합·전담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장애아동 및 장애관련 기관에 대한 예산투입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강제결혼, 여성생식기절단 등 아동권리를 저해하는 전통관습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철폐하기 위해 노력해

야 한다. 여섯째, 빈곤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육·교육·보건·주거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일곱 번째, 아동빈곤의 결정요인 및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아동빈곤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위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우리나라는 아동의

‘기초보건 및 복지’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행해야 한다. 첫째, 정신보건센터, 특히 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아동이 정신보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 2월 기준 155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여 정신질환자 관리, 재활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자

살예방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방정부는 「소아청소년광역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여 아동을 위한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09개 시군구는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를 실시하여 문제행동아동에게 상담, 놀이치료, 인지치료, 모래놀이치료, 부모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

표 6. 노르웨이, 벨기에, 일본의 ‘기초보건 및 복지’ 권고사항

권고사항		노르웨이	벨기에	일본
기초보건 및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모든 지역 내 아동의 보건서비스 접근성 보장	○	○	
	취약계층 가족 내 생후1년 영아의 건강상태 모니터링 실시		○	
	취약계층의 보건서비스 이용비용 감소를 위한 건강보험 시스템 점검		○	
정신건강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보건시스템 강화	○	○	○
	정신보건서비스 이용을 위한 긴 대기기간 감소 및 서비스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신보건시스템에 인적·경제적 자원 투입 확대		○	○
	ADHD에 대한 조사 및 ADHD아동, 부모, 교사 에 대한 심리적·교육적 지원 강화	○	○	○
	정신보건시설 내 아동의 생활실태 조사		○	
청소년보건	청소년의 약물남용 및 비만을 감소 방안 마련	○	○	
장애아동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전담)교육시설 확충 및 각종 서비스 확대		○	○
	장애아동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충분한 예산투입		○	○
	장애아동과 함께 하는 전문인력 대상 장애교육실시			○
	장애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정책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장애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대			○
아동권리를 저해하는 전통관습	강제결혼 및 여성생식기절단 등 아동권리를 저해하는 전통관습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철폐 노력	○	○	
HIV/AIDS	학교수업시간을 통한 HIV/AIDS 예방, 10대임신 등에 대한 교육실시			○
아동의 생활수준 보장	빈곤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육·교육·보건·주거서비스 제공	○	○	
	아동빈곤의 결정요인 및 영향에 대한 심층적 조사 및 대책 마련		○	○
아동양육비 회수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부모 모두에 아동양육 책임 부여			○
	부모의 양육의무비 부담 불이행시, 정부가 선지원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부모에게서 회수하는 방안 마련			○

자료: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노르웨이(CRC/C/NOR/CO/4), 45세션 벨기에(CRC/C/BEL/CO/3-4), 일본(CRC/C/JPN/CO/3)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oncluding observations을 바탕으로 재구성.

다. 이와 같은 아동의 정신보건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서야 생겨난 것으로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한국 현실에서 아동의 정신보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둘째, 정부는 빈곤아동에 대한 보호와 대책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 빈곤과 자녀의 교육수준의 긴밀한 관계는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게 하였고, 빈곤아동은 출발선부터 비빈곤 아동과 다른 현실에서 살고있다. 이에 아동 빈곤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특히, 1차소득을 기준으로 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정의 상대빈곤율(중위소득50%)은 60.8%로, 아동이 있는 양부모가정의 상대빈곤율인 8.9%의 약 7배⁹⁾인 것으로 나타나 한부모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

7)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제28조, 제29조, 제31조)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은 제28조, 제29조, 제31조에 대한 영역으로, 제28조는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제29조는 교육의 목적을, 제31조는 아동이 여가·오락·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3개국 모두에 교내 집단따돌림(bullying)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또한 아동도 따돌림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다.

2개국이 공통으로 권고 받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 중단율을 감소하기 위한 대책

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종·사회경제적 요인 등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교육 접근 가능성과 오락 및 문화활동 참여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영역의 권고사항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우리나라도 왕따(집단따돌림)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왕따로 인한 아동·청소년 자살이 빈번하게 발생할 만큼 집단따돌림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가 입시 준비기관으로 전략하면서 무너진 인성교육은 학생들의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전무하게 만들었고 집단따돌림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켰다. 지난 15대 교육감 선거에서 많은 후보들이 주요 공약으로 ‘왕따없는 학교’를 제시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과 9월 셋째주를 ‘친구사랑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따돌림 피해 아동의 자살은 집단따돌림과 공존하는 학교의 현실을 보여준다.

둘째, 노르웨이, 벨기에에 권고한 ‘학업중단을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도 교육강국 대한민국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 학교부적응, 가사 등이 학업중단에 주된 이유라는 젊은 학생의 학교 생활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충분히 학업중단을 막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에 정부는 학생들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진단-상담-치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Wee센터(학생안정통합시스템)의 확대 설치 등 다양한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아

9)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한부모가족 생활안정화 및 자녀양육 지원강화 방안 연구.

동이 사회·환경적인 이유로 교육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낮은 학교 적응도와 매년 증가하는 학업중단율에 대한 대책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장애·인종·사회경제적 요인 등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교육접근성과 여가, 오락 및 문화활동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권고사항은 다문화사회에 도래한 우리나라에도 권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문화가족의 수는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통합 정책을 확대하여야 한다.

8) 특별보호조치(제22조, 제32~34조, 제36조, 제37조 1~2항, 4항, 제38~40조)

특별보호조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22조, 제32~34조, 제36조, 제37조 1~2항, 4항, 제

38~40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특별보호조치는 난민아동, 아동노동, 마약, 성적 착취,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 고문, 비인간적 대우, 아동자유의 박탈, 무력분쟁으로부터 보호, 피해 아동의 회복 및 사회복귀, 공정한 재판과 대우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가 3개국에 공통적으로 권고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매매·거래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없애기 위한 법·정책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사법기관은 아동의 구금, 수감 등은 가장 마지막 조치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아동권리위원회가 3개국 중 2개국에게 권고한 사항을 정리한 결과, 약 7가지 권고사항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망명신청아동을 돕기 위해 후견인 제도를 촉진하고 후견인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아동에게 특별보호를 제공하고 원가족으로 복

표 7. 노르웨이, 벨기에, 일본의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권고사항

권고사항		노르웨이	벨기에	일본
교육	영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		
	양질의 영유아 교육기관 설치(특히, 다문화영유아를 위한 교육기관)	○		
	수업료 납부제 폐지 등 무상교육실시		○	
	장애, 인종, 사회경제적 요인 등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교육접근성 확보		○	○
	학업중단을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	○	
	교내 집단따돌림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	○	○
	지나치게 경쟁적 교육체제의 개편			○
	공정한 관점에서 역사교과서 제작 및 편찬			○
여가 및 문화활동	장애, 질병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여가, 오락 및 문화활동 권리 보장		○	○

자료: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노르웨이(CRC/C/NOR/CO/4), 45세션 벨기에(CRC/C/BEL/CO/3-4), 일본(CRC/C/JPN/CO/3)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oncluding observations을 바탕으로 재구성.

표 8. 노르웨이, 벨기에, 일본의 '특별보호조치' 권고사항

권고사항		노르웨이	벨기에	일본
망명신청아동	전쟁으로 망명신청한 아동의 사회통합방안 마련	○		
	망명신청아동을 돕기 위한 후견인제도 촉진 및 후견인의 역할 명확화	○	○	
	망명신청 결과의 조속한 발표	○		
	보호자 없이 망명신청한 아동의 특별보호, 서비스제공 및 원가족으로 복귀 우선화		○	○
	망명신청가족을 위한 적절한 임시거주지 마련		○	○
무력분쟁 속 아동	무력분쟁을 위한 18세미만 아동의 징집금지	○		
아동의 매매·거래	아동매매·거래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기관에 충분한 예산지원	○		
	아동매매·거래의 실태 파악 및 사회적 관심·지원 강화	○	○	○
	아동매매·거래의 철폐 방안 마련	○	○	○
성적 착취	성학대 및 성착취 피해아동 대상 정책 및 프로그램 강화	○		○
	성착취 가해자에 대한 조사 및 기소 노력 강화			○
	아동관련 종사자 교육에 성학대 및 성착취 내용 포함	○		
소년사법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소년사법 관련 종사자의 자격요건 충족 및 이들에 대한 아동권리 교육 실시	○		○
	최후의 조치로써 구금, 수감 조치	○	○	○
	아동구금·수감 장소와 성인구금·수감장소의 분리	○	○	
	아동의 거주 지역을 고려한 수감시설 결정		○	
	아동수감자 대상 직업훈련 등 교육 및 사회복귀서비스 제공	○		
	15세미만 아동은 구속대신 다른 조치가 취해져야 함	○		
	모든 사법절차에서 아동은 변호사나 신뢰관계에 있는 성인의 도움을 받음		○	○
	모든 행정적 처벌과 협약의 부합		○	
	형사책임을 지는 연령의 저연령화 재고			○
책임연령 미만 아동은 소년재판체제에서 다루어지고 범죄자로 취급되지 않음			○	
피해자·목격자 보호	폭력, 방임 등의 피해자·목격자 보호	○		
길거리에서의 구걸행위	부모의 동행과 상관없이 길거리에서 아동의 구걸행위 금지		○	
소수민족의 아동	원주민, 소수민족의 아동의 복지·보건·교육에 대한 접근성 보장 및 사회로부터의 차별,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		○

자료: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노르웨이(CRC/C/NOR/CO/4), 45세션 벨기에(CRC/C/BEL/CO/3-4), 일본(CRC/C/JPN/CO/3)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oncluding observations을 바탕으로 재구성.

귀하는 것을 우선화해야 한다. 둘째, 망명신청 가족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임시거주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성학대·착취 피해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소년사법 관련 종사자는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동권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섯째, 아동의 구금·수감장소는 성인과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여섯째, 모든 사법절차에서 아동은 변호사나 기타 성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일곱 번째, 원주민, 소수민족의 아동의 복지·보건·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차별, 폭력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가 3개국에 권고한 사항을 토대로, 우리나라는 다음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아동·청소년이 험난한 탈북과정으로 받은 신체적·심리적 상처를 치료하고 그들의 사회 재통합을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촉법소년 적용연령을 만 12세에서 만 10세로 낮추었다. 법원은 촉법소년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없지만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보호처분은 1~10호까지 내릴 수 있다. 가장 심한 10호 처분은 소년원 수감을 의미한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10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과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는 것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아동권리위원회가 2010년 3개국에 권고한 사항을 비교분석하여 국제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영역별 아동권리이슈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1991년 11월 비준하여 약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금까지 유보조항 3개 중 1가지를 철회하고, 정부의 자체적 모니터링을 하는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설립하며, 일부 지자체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교내체벌을 전면금지하는 등 아동권리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기에는 정부의 협약이행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정부는 인사개편이 잦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의 보건, 복지, 교육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수많은 과제들 중 무엇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본 고에서 분석한 결과와 2011년 9월 국가 심의 이후 아동권리위원회가 발표하는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토대로 아동권리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 큰 영향을 주는 국가 심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 대표단은 현재 유엔에 제출된 제 3·4차 통합 국가보고서와 아동권리 현실을 철저히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